

第184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7年7月14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徐相穆議員의 23인)
2. 教育基本法案(政府)
3. 初中等教育法案(政府)
4. 高等教育法案(政府)
5.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

審査된案件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徐相穆議員의 23인 發議) 1面
2. 教育基本法案(政府提出) 2面
3. 初中等教育法案(政府提出) 2面
4. 高等教育法案(政府提出) 2面
5.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提出) 2面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面

(14시24분 개의)

○委員長 金顯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徐相穆議員의 23인 發議)

○委員長 金顯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徐相穆議員의 스물 세 분이 발의한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徐相穆 議員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穆議員 徐相穆 議員입니다.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학교 급식시설·설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95년 12월29일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

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교육 경비를 보조하려고 해도 상기 법 제11조 5항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므로 기초단체의 의견과 상반되어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광역·기초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의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느껴도 승인절차의 번거로움과 그로 인한 광역단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아예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따라 재정지원 내역에 큰 차이가 있어 시·도별 균형있는 교육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96년도 총 보조금액의 73%, 97년 4월 현재는 85%를 차지한 반면 서울·부산·전북·경북·제주 등에서는 보조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유지, 인기위주의 선심성 지원 우려 등을 내세워 단서규정의 삭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분야에 경비를 보조해 주자는 당초의 법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선심성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동 법의 하위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사회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학교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5개 항목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보조사업 수행시 기초단체장의 재량범위는 지극히 좁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광역단체의 승인 의무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우리나라 경제에 이론과 경제정책 수립에 높은 경륜을 가지신 우리 徐相穆 議員께서 우리 교육계 발전을 위한 아주 지혜로운 법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富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997년 7월 3일 徐相穆, 金德龍, 金重緯 議員의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4일 當委員會에 회부된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법안 제11조 제5항의 후단 “이 경우 市長, 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の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여 시·군 및 자치단체인 구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市·郡 및 自治區의 教育經費補助에 관한 規程」이 정하는 5개 항목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학교에 경비지원을 하려고 해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同法律을 개정하여 基礎自治團體長이 자율적으로 管轄區域內의 학교에 경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改正法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는 내무부측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지역적 불균형과 갈등이 생기고 따라서 教育의 衡平性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教育自治는 住民自治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그 지역 형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내 학교에 자율적으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教育自治와 住民自治의 연계를 가능케 하여, “自律과 參與”라는 교육개혁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顯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教育基本法案(政府)

3. 初中等教育法案(政府)

4. 高等教育法案(政府)

5.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

(14시31분)

○委員長 金顯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教育基本法案, 의사일정 제3항 初中等教育法案, 의사일정 제4항 高等教育法案, 의사일정 제5항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의사일정 제6항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다섯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教育基本法案, 의사일정 제3항 初中等教育法案, 의사일정 제4항 高等教育法案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정부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존경하는 金顯煜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教育基本法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를 말씀 드리면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38회의 부분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全面的인 改正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인 모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편리하고 충실하게 받아 소양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열린 교육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 교육법을 教育基本法등 3개의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중 教育基本法은 모든 교육의 기본법으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教育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둘째, 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住民의 平生教育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넷째, 平生教育을 위한 모든 형태의 社會教育은 장려되며,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學習者의 기본적 人權은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여섯째, 父母등 保護者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제도를 수립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初·中等教育法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법안의 제정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教育基本法과 그 배경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개혁방안에서 초·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 시행됨에 따라 學校評價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의 도모, 학습부진아에 대한 시책의 강구, 학생징계시 적정절차의 보장 및 교원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法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教育部長官 및 教育監은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教育部長官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함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學生의 自治活動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셋째,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넷째, 學生의 학업성취도 및 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여섯째,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곱째, 근로청소년등의 教育받을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4년제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教育制度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계법령 중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어서 高等教育法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를 말씀 드리면 본 법안의 제정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教育基本法 및 初·中等教育法과

그 배경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國民에게 高等教育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大學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 시행됨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통한 教育의 질적 향상 도모, 산업계와의 연계강화, 학점인정의 확대 및 교원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法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래의 開放大學을 産業大學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와 教育部長官의 학교에 대한 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學生의 自治活動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넷째,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 및 實習學期制를 도입하고, 국내·외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專門大學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중 教育部長官의 학력인정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教育基本法案과 初·中等教育法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富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997년6월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教育基本法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制定法案은 1949년12월31일 제정·공포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教育法을 교육개혁의 법제적 뒷받침의 차원에서 教育基本法, 初·中等教育法 및 高等教育法의 3개법으로 구분 제정하는 일환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教育關係法의 基本法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教育法이 학교교육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법안은 사회교육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이 平生教育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갖추도록 하여 교육에 관한 실체적인 기본법이 되도록 한데 대해서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을 제1장, 제2장, 제3장 순으로 검토한 의견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總則에서는 교육이념, 학습권,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중립성 등 교육에 관한 강령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념은 案 제2조에서 현행 教育法과 마찬가지로 弘益人間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1949년 教育法 제정시 교육이념으로 제시된 이후 우리 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발전되어 온 점을 감안 할 때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案 제3조에는 학습권을 새롭게 도입 규정하고 있습니다.

學習權은 교육받을 것을 국가 및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습권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學習權은 원래 “교육할 권리”를 뜻하는 교육권에 대응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문의 표현상 안 제3조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는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案 제5조에서는 教育의 自主性 및 專門性과 學校運營의 自律性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案 제6조에서는 教育의 政治的 中立性과 宗教的 中立性 등 교육의 중립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教育의 自主性, 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を 교육에 관한 민주적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중립성은 교육이 갖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의 독자성과 교육본질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案 제9조는 學校教育의 종류와 학교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案 제9조 제4항에서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의 종류 등 學制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타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學制는 학교교육의 기본이며 골격이라는 점에서 教育基本法에 이를 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학교의 종류 등 학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법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教育基本法에 규정하지 않고 타법령에 위임토록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案 제10조에서는 國民의平生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려와 학교교육과의 연계, 사회교육시설의 법정화 및 사회교육에 관한 개별법 제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법이 사실상 學校教育法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던데 반하여 이 법안은 學校教育 뿐만 아니라 社會교육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2장 教育當事者에서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및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學習者의 基本的 人權은 學校教育 또는 社會教育의 과정에서 尊重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의 教育觀 변화에 부응하여 教育의 主體로서의 학생의 地位 및 權利와 義務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래 在學關係를 特別權力關係로 보아 학교에서 법률의 근거없이 부당하게 學習者의 人權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볼 때 학습과정에서 學習者의 基本的 人權을 명백히 하여 學習者의 人權이 尊重되고 보호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敎員의 地位와 敎員의 權利 및 義務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는 敎員團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①에서는 “學校教育에서 敎員의 專門性은 尊重되며 敎員의 社會的 經濟的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敎員의 專門性과 社會·經濟的 優待, 身分保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專門性은 敎員의 專門性 尊重과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敎員의 專門性 尊重”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敎員團體)를 규정하고 있는데 教育會를 敎員團體로 변경한 이외에는 現行 教育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각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敎員團體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教育發展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3장 교육의 振興은 現行 教育法과 비교하여 보면 英才教育, 職業教育, 科學教育, 教育의 情報化, 私學의 育成 그리고 學力評價 및 認證制度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변하고 있는 教育環境과 需要에 대응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안 제26조는 平生教育의 차원에서 社會教育과 學校教育을 연계하고 상호보완하는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制度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高度情報化 社會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기술의 습득과 개인의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學力評價·認證制度를 확립하는 것은 실력주의, 능력주의 社會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國際化時代에 대비한 國際教育의 根據 範圍 등을 규정하고 안 제30조에서는 國際教育協力の 根據 範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國際教育과 國際教育協力を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國際教育과 國際教育協力は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동일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호 부록에 실음)

첨부한 수정의견 대비표는 심사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1997년6월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初·中等教育法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法案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法案은 現行教育法중 幼兒教育 및 初·中等教育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初·中等教育分野의 教育改革方案으로 제시되었던 사항들을 새로이 規定함으로써 이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고 그와 不合理한 規定들을 整備하려는 것으로 本則5章67條 및 附則12條로 구성된 制定法案입니다.

정부는 初·中等教育法 制定을 위하여 2년여에 걸쳐 「制定試案」에 대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을 개선하여 정리한 바 있으므로 이 法案의 내용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法案의 내용중 政府 立案과정에서 爭點이 되었거나 現行 教育法 대비 신설 또는 修正·補完되어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제1항에서 學校長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現行 教育法施行令에 규정되어 있던 學則의 制定과 改正에 관한 사항을 整備·補完하여 法律에 명시함으로써 學則의 法的根據를 施行令에서 法律로 上向調整하려는 것입니다.

學則은 法規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管轄廳의 認可事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法的根據를 施行令이 아닌 法律에 두도록 立法措置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現行과 같이 認·許可 사항을 施行令에 근거를 두고 施行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1항에서는 學校長의 學校規則 制定權을 國·公·私立學校 모두의 경우에 適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現行과 같이 施行令에서 私立學校設立認可를 받기 위해서는 申請書類에 學則을 포함하여 基本書類로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 學校長이 選任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私立

學校 設立·經營者가 學則을 制定하는 결과가 되므로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8조1항에 다음과 같이 但書條項을 新設하여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私立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教育監의 認可를 받아 學則을 制定한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教育部長官은 學校에 在學중인 學生의 學業成就度を 測定하기 위한 評價와 教育行政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各市·道教育廳에 대한 評價 그리고 各급학교에 대한 評價 이상 3가지 유형의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各급 評價의 法的根據를 마련하고 또한 評價의 對象, 基準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며 評價對象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評價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 評價중 學業成就度評價 및 市·道教育廳評價에 관한 法的根據 新設에 대해서는 별이견이 없습니다마는 學校評價에 대해서만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學校評價는 학생 개개인의 學業成就度を 評價하는 學力評價와는 달리 학교라는 教育機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評價함으로써 學校教育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교사, 학부모, 地域社會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學校評價에서는 教育課程編成 운영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효과성 학교경영 및 재정운영의 效率性 등 學校教育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評價하게 됩니다.

學校評價가 學校教育의 질을 評價 관리함은 물론 學校運營의 民主性 行·財政運營의 效率性·義務性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을 감안하고 英國, 美國 등 先進國에서도 學校評價擔當機構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學校評價의 실시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初·中等學校의 현실을 감안할 때 初·中等學校에 대한 學校評價가 실시될 경우 과연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선 評價對象인 學校가 初等學

校, 中學校, 高等學校 등을 합쳐 모두 1萬餘個校에 이르는 방대한 숫자인데다가 그 評價에 따른 人力과 豫算소요도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고

둘째 아직 초·중등학교간에 教育課程, 敎員의 構成, 학생들의 學校生活등 학교운영 방법, 학교시설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셋째 學校評價가 일선교원들에게 또 다른 業務負擔을 지우게 할 우려도 있고……

○委員長 金顯煜 鄭富永 首席專門委員! 아주 열정적으로 검토보고를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그 자리에서 쉬세요.

우리가 의결할 것이 하나 있는데 신한국당의 위원 여러분들께서 당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석을 뜨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결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지요.

먼저 회의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6건의 법안, 이제 제안설명이 되고 또 검토보고가 될 6건의 법안은 法案審査小委員會에 回附해서 심사보고토록 그렇게……

○薛 勳委員 안됩니다.

지금 이상하게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

○委員長 金顯煜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薛 勳委員 글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절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뭐 날치기 하려고 그러니까? 안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委員長 金顯煜 아니 날치기가 아니고 이 법안이 날치기될 수 없고……

○薛 勳委員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委員長 金顯煜 그러니까薛 勳委員 이것 보세요. 이 법안이 제안이 되고……

○薛 勳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게 말씀드리면 성급하면 안되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야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연 경우에 맞지 않는 식으로 말그대로 날치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심의·검토해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는 것 계속 듣고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委員長 金顯煜 알았어요.

○安澤秀委員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신한국당 사정을 보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간단치가 않는 것이 오늘 회부되어 있는 법안을 소위원회 토의로 넘기는 것을 결정을 미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신한국당이 4사람 야당이 두당 합쳐서 3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당 마음대로 또 다시 결정해 가지고 본위원회 토의에다가 또 넘겨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국당이 당내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체토론이 다 끝나고 표결할 때 그때도 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알겠습니다.

두분 위원의 의견이 그러시고 양당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위원의 입장에서는 議決定足數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首席專門委員 檢討報告 계속해 주세요. 중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專門委員 鄭富永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평가가 일선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도 있고, 넷째 學校評價結果活用過程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지나친 관심유발로 副作用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안에 두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학교평가의 실제실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學生의 懲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案 제18조제1항은 學校長의 學生懲戒權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교육법 제76조 중 “學生을 懲戒 또는 處罰할 수 있다.”를 “學生을 懲戒하거나 其他方法으로 指導할 수 있다.”로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징계시 학생의 意見陳述 기회부여 등 적절한 節次를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안 입법과정에서 현행교육법상 “處罰”을 “제재(制裁)”로 수정하였다가 다시 “指導”로 수정한 것입니다. 일부의견 중에는 교사들의 지나

친 체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외국 입법예와 같이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교사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學生의 訓育·指導者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한정된 징계방법으로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외에 “其他方法으로 指導”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指導”의 개념이 앞으로 시행령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는 사항 이외의 모든 제재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때, 學生體罰禁止와 관련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體罰이 아닌 罰”을 이용한 학생지도의 방법과 그 한계등에 관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敎員의 任務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薛 勳委員 교원의 임무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니 보고해 보세요.

○專門委員 鄭富永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案 제 20조제3항은 敎師의 任務를 규정하면서 現行敎育法제75조제1항제1호중 교사는 “校長의 命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를 “校長의 指導를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敎育觀과 自律性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교장의 명을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校長의 命을 받아” 부분을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일선교사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와 같이 “命을 받아”를 “指導를 받아”로 용어를 순화하여 존치한 것은 학교장과 교사들간의 의견대립을 의식한 절충적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學校運營委員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案 제4장제2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設置, 機能, 構成·運營과 學校發展基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現行 地方敎育自治에 관한法律제44조의2와 同法施行令제27조 그리고 각 市·道條例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初·中等敎育法案에 移記한 것입니다.

案 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은 現행과 같이 國·公立學校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私立學校에는 이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

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敎育基本法案 제5조2항의 입법취지를 살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보장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案 제31조제3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敎員代表, 學父母代表, 地域社會 人士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敎育基本法案제5조제2항에서 학생에 대하여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동법시행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하여 法律 相互間에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보다는 학생들은 교육수요자로서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學生代表를 參考人으로 출석시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案 제32조는 각호에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敎育改革委員會 試案으로 제시되었던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履行義務 및 再議要求權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과 운영위원들간에 의견대립·반목 등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의견조정, 재심의 등 원만한 해결방안을 교육부는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委員構成, 任員選出에 있어 校長, 校監의 參與·被選資格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案 제33조는 학교운영위원회는 學校發展基金을 조성할 수 있고 동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는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안에서는 당해학교 학부모가 아닌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금조성대상에서 학부모를 제외하면 기금조성의 實效性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금조성의 對象者에 대한 制限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이 주로 학부모로부터 기금을 각출·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조성·운용될 때 學父母에 대한 과중한 負擔 등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금의 조성을 학부모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조성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 幼稚園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案 제4장제3절에는 유치원의 目的과 入學年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규정외에도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는 幼兒教育振興을 위하여 “幼稚園 無償教育의 順次的 實施”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하였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유치원교육 시설확충 및 유치원교사정원 확보에 따르는 소요재원이 막대하여 그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여러 선진국의 교육정책과 비교해 볼 때 뒤쳐지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人的資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시발점이 되며 기초가 되는 幼兒教育을 等閒視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幼稚園教育의 公教育化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 幼稚園無償教育의 순차적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幼稚園教育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유치원무상교육실시 대상지역 선정과 자금투자계획을 위 계획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특별히 과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외 附則規定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字句整理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修正意見條文對比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顯煜 鄭富永 首席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等教育法案에 대해서 柳三鉉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柳三鉉 柳三鉉 專門委員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月24日 政府로부터 제출되어 6月26日 당 위원회에 회부된 高等教育法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法案은 教育基本法案, 初·中等教育法案과도 連繫되어 있으며, 條文에 따라서 新設 또는 修正·補完된 관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學校의 種類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高等教育을 실시하기 위한 學校의 種類는 4페이지 상단에 있는 表를 참고해 주시고 현행교육법과 비교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師範大學을 學校의 種類에서 削除하였습니다.

師範大學을 法에서 별도로 規定하지 않는 것은 敎員養成이라는 師範大學의 特殊性이 學事運營에서 看過되기 쉽고, 또 同法案 第43條에서 中等敎員養成機關으로서 師範大學을 規定하고 있는 바, 이를 과거처럼 學校의 種類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開放大學을 産業大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産業大學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과, 産業大學의 位相을 재정립하자는 그 동안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放送通信大學을 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으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는 바 이는 媒體의 性格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大學設立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學校간 배열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學校의 種類에 관한 規定에서는 大學과 産業大學을 각각 분리해서 규정하면서도 각 學校를 하나의 節에 規定하고 있는 案 第3章 이하에서는 大學과 産業大學을 같은 節에 규정하고 있어서 體系가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學校의 設立認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は 일정한 設立基準을 갖추어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도록하여 학교 설립에 관하여 현재의 學校設立認可主義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學校規則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學則에 대한 認可를 하는 경우에는 法令과 國家教育 政策方向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認可로 간주하는 등 學則報告制의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學校를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에 누가 學

則을 制定하는가 하는 점과, 기존 學則에 대한 經過規定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규정은 大學의 自律性 伸張에 따른 責務를 부여함으로써 大學의 競爭力을 確保하고 優秀한 教員을 確保하도록 유도하여 질 높은 教育을 具現함으로써 學校運營의 公共性과 透明性을 保障하고, 評價結果를 公開함으로써 教育需要者에게 올바른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學校評價의 도입목적에도 불구하고 學校에 의한 自體評價는 政府가 大學에 대한 行·財政的 支援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자체평가 실시 여부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自體評價를 유도할 수 있고, 대학 스스로도 教育需要者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有利해질 수 있다는 점을 認識하여 自體評價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自體評價에 관하여는 法律에 規定하기보다는 大學自律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教職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教職員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副總長과 副學長은 補職 概念이므로 教員의 種類에서 삭제하고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하였는바, 助教는 직무의 성격상 專任講師 이상의 教員과는 相異 할뿐만 아니라 學生의 教育과 研究活動에 關與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教員에서 제외되더라도 經歷管理 등에 있어서는 不利益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教員의 資格基準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案 第17條는 教員과 助教의 자격기준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教育法은 教員의 資格基準을 法律에서 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大學教育의 質 관리를 위하여 教員의 資格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教授 資格審査委員會에 관한 규정도 현행과 같이 法律에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大學名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學教育機關의 名稱을 國立學校는 大統領令으로, 公立學校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私立學校는 學校法人의 定款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며, 그 名稱을 정할 때에는 産業大學·教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은 그 名稱중 大學을 각각 大學校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大學評議員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教育法과 同法施行令에 의하여 國·公立大學에서 教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大學評議員會를 두도록 하고 있고, 私立學校法에는 大學評議員會의 構成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同 法案에서는 國·公立·私立大學 모두 필수적으로 構成하도록 규정하여 앞으로 大學 構成員의 다양한 意見收斂을 통해 大學 運營의 質을 提高시킬 것으로 期待됩니다.

다음은 大學 및 産業大學의 規定方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案 第3章第2節 이하에서는 大學과 産業大學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 案 第2條 學校의 種類에서는 大學과 産業大學을 分離 規定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案 第3章에서 産業大學과 大學을 같은 節에 規定하고 있어 체계상 어색한 면이 있는바, 大學과 産業大學을 독립된 節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大學의 學生定員과 附設實習學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專門大學의 目的과 授業年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과 같이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대학의 특징과 상치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대학의 졸업자의 편입학 제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학교 졸업자에 대한 學位授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육여건이 부실한 각종학교에서 학위를 남발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바 학력인정학교지정기준 등을 엄격히 하는 등 향후 각종학교 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예산·결산 공개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顯煜 柳三鉉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5.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15시18분)

○委員長 金顯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의사일정 제6항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정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존경하는 金顯煜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력평가기능을 담당하던 국립교육평가원이 1997년12월31일 폐지되게 됨에 따라 同 평가원에서 담당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지험을 실시할 대체기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학업성취의 평가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분리하여 수행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5월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위의 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학업성취의 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개혁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등에게 신뢰성 높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학업성취기준 및 성취도평가도구의 개발,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지험의 관리,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셋째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넷째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학력평가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하고 다섯째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지험시행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평가원의 임·직원과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학력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者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며 刑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업무는 지금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또한 우리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를 담당해 오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연구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핵심적인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대학등에 대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지역의 소규모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中學校義務教育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한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새로운 해산사유로 추가하도록 하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학교법인이 정하는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외국인이 기본재산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두도록 하고 넷째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 당시의 학교법인이 정하는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公益法人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원의 직무이탈로 인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정하여 期間制敎員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학교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柳三鉉 專門委員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柳三鉉 柳三鉉 專門委員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月24日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6月26日 당 위원회에 회부된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과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분리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研究·開發機能과 學力評價機能을 일원화하여 양자간의 상호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임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教育改革方案의 핵심인 初·中等 教育의 正常化와 大學入試制度의 발전 등 教育改革方案을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러면 주요사항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립교육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全國水準의 學力評價試驗을 민간기구인 韓國教育課程評價院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1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정부는 향후 예정되는 隋時選拔制와 選擇修能制 導入등 학력평가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인력에 의한 출제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출제회수와 출제과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의 타당도와 난이도와 신뢰도 등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구의 전문성에 의한 공신력 확보에는 상당한 기간과 국민적 신뢰가 필요하고 同評價院이 설립되더라도 당분간은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칫 시험문제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同 평가원의 구성원은 대부분 연구원일 것인 바 우리나라의 각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昇進메리트의 부족에 따른 사기저하와 업무추진의 어려움 그리고 잦은 이직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진의 메리트가 적은 연구원이 주축이 된 同 평가원의 직원이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평가업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는 보수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인 바, 同 평가원 운영이 당분간 정부출연금에 의존할 것이고 그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同 평가원 설립이 작은 정부조직을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지 않는 다양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고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의 업무기능을 추가할 경우에는 단위기관의 규모와 업무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복합이질기능의 수행으로 기관의 전문화·특성화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대별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과정 관련업무와 학력평가업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과……

○薛 勳委員 지금 이 검토보고서가 나와있는데 현재 평가한 사람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다 하는 내용은 한 줄도 한 마디도 안 들어갔네요? 무슨 검토보고가 이래요?

○專門委員 柳三鉉 무슨 말씀……

○薛 勳委員 아니 柳三鉉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서를 만드셨는데 현재 교육평가원에 있는 분들이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마디도 없습니까?

○專門委員 柳三鉉 업무문제 맨 밑에 가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과 채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지 국가수준의 각종 학력평가시험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것이 활성화되고 同 평가원의 학력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경우에 사설입시기관의 모의고사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처럼 전국적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성 확보와 원만한 시험시행을 위해서는 인력·장비와 시설 등에 대하여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바 민간기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 평가원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원장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출연기관은 감사가 거의 비상근인 바 同 평가원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지

대한 대학입학시험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인 문제는행체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사를 상근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運營財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運營財源은 정부의 출연금·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교육과정과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자료 등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게 될 업무들은 그 기본 성격상 충분한 財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수료등 자체수입도 설립초기에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적절한 수준의 정부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指導·監督權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같이 주무부장관에 의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지도·감독권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평가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사업년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신과도 거리가 있으므로 “教育部長官이 지정하는”을 삭제하고 공인회계사외에 회계법인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關聯事業의 移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개발업무와 교육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교육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능조정과 그에 따른 유휴인력 활용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韓國教育開發院育成法에는 同 개발원의 기능과 관련된 조문이 하나도 없이 정관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법적인 측면에서 위상제고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폐지되는 국립교육평가원 직원이 신분전환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관련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이들이 불만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外國人 理事 定數 擴大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 단서는 “大學教育機關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校를 設立·經營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가 學校法人 基本財産額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出捐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理事 定數의 3분의 2미만을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통상적인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사에 의한 학교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외국의 교육내용이나 대학경영기법을 우리 대학에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同 법안은 開放對象學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그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개방대상학교에 대한 정부부처내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對外 開放對象을 대학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案 제35조의2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생수 격감으로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殘餘財産은 학교법인이 지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학생수 격감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립중·고등학교의 폐교와 그에 따른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特例措置는 소규모 사립중·고등학교가 비교적 많은 농어촌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지역은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와 중학교 무시험추첨배정등으로 사립학교로서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고 사학재정의 영세성으로 교육여건이 부실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법인재산의 개인귀속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용재산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특례규정이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과 분교 통, 폐합조치 그리고 소규모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조치와 밀접상통하는 것으로 농어촌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치로 폐교되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대상학교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폐교되는 학교에 취학중인 학생과 취학예정자들의 전·입학과 통학문제 그리고 해당 학교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법인 해산 인가시 그 적정학생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여 해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35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同條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사립학교가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로 학교법인 해산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잔여재산처리와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해산의결시에는 그러한 특별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이 경우에도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期間制敎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顯煜 柳三鉉 專門委員,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4·5·6항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薛 勳委員 議事進行發言이 있습니다.

15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로 여야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첨예한 대결상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만큼은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참으로 국정심의를 심도있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민회의와 自民聯의 위원들과 그리고 新韓國黨의 위원들의 성숙한 자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몇 개 법안을 앞에 두고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해 왔던 그 傳統이 일거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들이 쌓아올린 tap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그런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여당, 신한국당 위원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런 법률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고 野黨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를 갖고 생각하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병폐중의 하나가 졸속처리 하다 보니 생겨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教育問題올시다. 한번 법안을 잘못 정해 놓으면 그게 두고두고 우리에게 양화를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법안처리를 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더군다나 敎自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것이 법안으로 올라와서 그동안에 죽 논의를 해 본 결과 많은 접근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렇게 진행된다면 與野間에도 합의된 법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참입니다. 나

머지 법률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 낯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 참으로 여당을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이 법안들이 심의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금의 전통을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鄭喜卿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顯煜 말씀하세요.

○鄭喜卿委員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가운데 “오늘 신한국당에 사정이 있어서”라는 말씀이 계셔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정이 있으시면 그것도 역시 감안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죽 보니까 幹事會議를 다시 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날짜를 더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여기서 전연 大體討論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법안 심의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여년 된 교육법이 부분적으로 많이 수정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법을 고치는데 거기에서 이 15대 국회가 이 교육법 개정에 가지는 의미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한국당 측에서 오늘 이 대체토론을 끝까지 잘 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으시면 우리 이 회의를 다시 한번 모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진행발언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顯煜 좋은 말씀이에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특히 小委員會 回附에 대한 문제는 신한국당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대체토론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가 구성한 소위원회에 이 여섯개 법안을 회부

하기로 결정한다 하는 전제가 되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분의 위원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요즘 회의를 해보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아홉 분의 위원을 이 자리에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개 법안은 토론을 해서 불충분하다 이것은 더 토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무조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는 의사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薛勳委員이 조금 착각을 했어요. 요즘 상당히 너무들 바쁘다 보니까 심경이…… 지수가 상당히 높아진 모양인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薛勳委員 오해한 게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그러면요. 우리 薛勳委員을 내가 왜 흥분하게 만들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한국당 측에게는 좋은 충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黨政協議會라는 이름으로 항상 논의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위원회의 定足數는 사실 지금까지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점에 대해서 야당위원 여러분들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우리 여당의 政策委 議長까지 나오신 것을 보니까 대단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충분히 대체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상식과 그림과 질서에 입각한 면에서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하고 책임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大體討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언신청을 해 주신 분이 지금 네 분입니다. 또 계시겠지요? 먼저 安澤秀 委員부터 토론해 주시지요.

○安澤秀委員 安澤秀 委員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여섯가지 법안 중에서 高等教育法案과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만 다소의 이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저는 원안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金顯煜 委員長, 薛勳 幹事와 사회교대)

먼저 高等教育法案 중에서 대학과 산업대학간의 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産業大學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교육부는 이 산업대학 처리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에 산업대학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식보고는 없이 이번에 법안으로 처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섭섭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산업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를 충분히 우리들한테 할 수 있도록 教育部案을 내놓겠다고 해 놓고는 슬그머니 법안으로 슬쩍 내놓고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 말입니다.

교육부는 산업대학 문제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 산업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왜 교육부는 일찍이 과거에 산업대학의 두 대학을 임의로 일반대학처럼 명칭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으며 그런 衡平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국회에서 지적을 그렇게 받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교육부는 이 점에서는 하나로 통일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리 산업대학 명칭을 폐 준 두 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넣겠다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산업대학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나는 동의해 주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점의 언급도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대학 19개는 뽕뽕 묶어서 이것은 산업대학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자세는 이것은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육부는 어디 법 위에 있는 교육부가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정부부처입니까? 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와 같이 내놓습니까?

그리고 이 산업대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첫째는 교육환경이 변해 가지고 開放大學 즉 산업대학의 존재의의가 이미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차하게 다 설명을 안들으셔도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대학이 개방대학 체제의 특징과 장점을 많이 이미 수용을 해 갖고, 두번째는 技術大學의 法制化로 개방대학의 차별성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대학설립과 운영규정의 제정, 시행으로 교육여건이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행정적, 사회적 차별화로 인해서 개방대학 주체들의 욕구가 이미 엄청나게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방대학의 체제 존립이 한계에 도달해 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구태여 산업대학이다, 개방대학이다 하는 울가미를 덮어 씌워서 교육부의 마음에 드는 대학은 마치 일반대학처럼 명칭 사용을 허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온다면 우리 국회는 교육부가 원하는대로 법안 통과를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原狀回復해서 교육부의 지금 현 방침대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원상회복 시켜서 제대로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19개 산업대학도 푸세요. 풀어서 고등교육법안 제2절에서 대학과 산업대학을 분리해 놓은 것을 산업대학 부분을 삭제하세요. 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분명히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렇게 목이 메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판단을 내려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겠다고 국회에 법안을 내놓으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계서는 분명하게 兩者擇一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에 대한 대체 토론입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들어지는 하고 많은 이야기도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평가원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인식은 아까 우리 柳三鉉 專門委員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하던 학력평가 업무와 대학 수능시험을 비롯한 제 시험의 출제, 감독, 채점 이런 문제들이 정부출연기관에서 하면,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하다가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하면 그 公信力과 信賴性의 문제는 이것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시험의 공공성 확보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행정력과 보안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시험은 保安이 완전히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해도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날 때도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기구에다가 이렇게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그만한 사

고가 났을 때 또 큰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이런 점……

또 세번째는 지금 정부기관에서 하니까 그나마도 시험본다 할 때 ‘출제위원으로 나오시오, 검토위원으로 나오시오, 시험관리인으로 도와주시오.’ 이랬을 때 다른 부처, 다른 관계기관에서 협조라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民間機構로 테 넘어가게 되면 다른 정부 부처의 원만한 협조를 바라기는…… 정말로 한 차원 아래로 떨어지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난번 임시국회때도 제가 평가원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학업성취의 평가를 그럴 듯한 명목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부는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저 자신이 판단할 적에는 여기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로는 세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관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는 연말로 폐지되게 된다는 國立教育評價院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폐지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행위로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없어지는 것인지 무슨 법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이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국립교육평가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몇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당초 정부 案대로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고 教育課程評價院으로 신설이 될 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립교육평가원의 공무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분들 중에 전원이 교육부 산하 다른 부처로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이 중에서는 옷을 벗고 신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예상하는 방법 어떻게 변하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난 번 臨時國會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 정부가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는 차원에서는 작은 정부의 목표와 주장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곧이어 몸덩치가 커지게 되는 이 교육과

정평가원이 3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 수보다 3배로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지난 번 임시국회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뒤에 교육과정평가원의 내일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말만 작은 정부지 政府機關을 줄이는데는 성공할 지 모르지만 그 기능과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민간기구는 3배로 커진다면 정부 출연기관이니까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정부예산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는 없애고 민간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네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국립교육평가가원이 업무를 차질없이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우수인력 석사나 박사 일정 수의 우수인력만 조금 더 확보를 한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훨씬 더 제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教育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薛 勳 安澤秀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範珍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範珍委員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教育基本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학교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대학을 불문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급진적인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꼭 규정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대학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으로 보면 보다 교육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初·中等教育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된 문제입니다.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했지만 취학 전 1년 無償教育을 할 때는 소요재원이 1조

6,000억이나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저는 이 재원문제를 이유로 해서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財源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은 도시지역은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보면 大統領令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당장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요재원을 이유로 해서 취학 전 1년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일단 幼兒教育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 또 책임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당장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번째는 學校運營委員會設置問題 입니다.

지금 법안에 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학교의 경우에는 무시험 진학을 시키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학생이 자기가 선택해서 사립학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행정당국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배정을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대해서 일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봉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 내용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審議機構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의결기구인 것 같습니다. 법안의 조문은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議決權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독립성, 자주성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그러면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 자문기구로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는 기구의 성격을 바꾸

어 가지고 자문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高等教育法에 보니까 대학의 경우에는 국·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대학평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학은 그것을 구분 안하고 있어요. 대학도 재단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은 대학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교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양양시켜줄 수 있는, 교원제도를 바꾸기 위한 이런 조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教育改革에 관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고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일선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것으로 냉담한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의 큰 불만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處遇問題고 둘째는 職級の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우문제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원하는 직급, 명칭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敎員制度의 변화가 이번 법안에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번 法案에 꼭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高等教育法에 대해서는 安澤秀委員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대학의 종류에 보면 산업대학을 대학과 구분해서 별도의 대학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대학의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도 대학마다 자율화되고 상당히 변화를 갖게 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대학마다 상당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대학을 굳이 4년제하고 구분하는 것은 현재 우리 대학운영의 자율화 추세 이것에 안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제가 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학제가 학생들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학제를 유지하면 안됩니다. 좀 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安澤秀委員도 지적했다시피 이미 산업대학 중에서 일부 지역의 어느 대학은 그 명칭을 떼어버렸어요. 떼어버렸어도 지금 교육부가 그것을 회복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교육부의 어떤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면서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산업대학 명칭을 써라 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부가 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英國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英國의 교육제도를 시찰하기 위해서 14대 때 英國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英國에 가 왔더니 英國에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낸 法案처럼 대학과 산업대학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와 폴리테크닉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대학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유니버시티와 폴리테크닉의 구분을 없애기로 해 가지고 모든 대학을 유니버시티로 통일했다고 그러니까. 英國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구분해 놓으니까 폴리테크닉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젊은이들을 뭐하러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까?

저는 외국의 추세도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薛 勳 幹事 安澤秀 幹事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安澤秀 朴範珍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薛 勳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오늘 法案이 6개 상정되어 있는데 우선 6개 法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法案審査小委會에 가 있는 地方教育自治法에 관한 것도 하지만 이 부분도 처음 교육부에서 내놓은 法案과 지금 각 교육단체라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敎自法을 놓고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이 지금 대단히 많이 양해가 됐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

리 敎自法이 지금 정부와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교훈이랄까 모범담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첨예하게 서로 오해도 하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 法案을 대했었는데 지금은 상당부분이 접근해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하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 참으로 일치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특히 이 교육이 百年大計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법들은 거의 교육의 골격을 짜는 중요한 法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제대로 된 法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먼저 教育基本法과 初·中等教育法 高等教育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데로 현행 教育法은 제정된지 근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49년에 제정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수십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 자체가 말하자면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教育基本法 初·中等教育法 高等教育法으로 3분해서 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教育基本3法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들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논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급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틀을 짜는 法案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바는 이번 教育基本3法은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은 여야간에 전적인 합의를 유도해내야 한다. 완전한 합의 속에서 이 법이 탄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 政權이 마감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이번 12월이면 다음 政權이 들어섭니다. 政權이 그냥 이어서 여당으로 승계가 될지 또는 완전한 政權교체가 되어서 야당이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문제이겠습니까라는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고 내각이 바뀌는 그런 획기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중대한 法案들을 줄속으로 처리한다면 참으로 나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교육3법은 다음 政權에서 충분히 결정하고 충분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가 경영철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지도부에서 이 법들을 대하고 그리고 교육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으로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 법들은 다음 政權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이번 1997년도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서 教育基本法과 初·中等教育法, 高等教育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법들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우리가 그 동안에 教育改革을 한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교육개혁의 주작업을 맡았던 부서가 大統領直屬으로 教育改革委員會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라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野黨委員인 제가 인정하고 또 그간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教育3法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案과 비교해 볼때 교육부안이 크게 後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면 우선 교육개혁위원회의 試案에서 보면 初·中等教育法 제20조 敎員의 任務에 대해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한다.” 이렇게 교육위원회 시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같

은 법 제21조제4항에 “교사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교육법의 악법적 規程으로 規定하고 있는 “教師는 校長의 命을 받아 教育한다.” 이 부분을 고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이 시안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재 교육계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서 고치려고 애를 쓴 부분으로서 우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완전히 삭제되거나 현재 “校長의 命을 받아 教育한다.”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한, 거의 같다고 보아도 좋을 “校長의 指導를 받아서 學生을 教育한다.” 아까 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타협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개혁위원회의 판단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시안이 훨씬 더 우리 교육 현실에 맞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고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똑같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의 이 教育3法은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敎員團體에 대한 規定에 있어서도 敎改委 試案을 보면 교육기본법 제12조제2항에 “敎員團體의 組織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교육현장과 다른, 이를 테면 교육부의 일방적 생각으로 만들어 낼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법령으로 분명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敎改委 試案에 敎務會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인데 교무회의를 법적 기구로 둘 것을 교개위 시안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안에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것도 후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교육부쪽에서 얼마나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公聽會 案에 지금 우리 교육개혁중에서 가장 잘 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가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안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부가 어떤 시각으로 교육개혁에 대해서 보고 있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교육부장관계서는 참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쨌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조차도 그냥 잘라 버리고 우리가 볼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도 개혁적이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조차도 그냥 흔들어 가지고 무마시키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3법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백년대계를 내다볼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3법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놓고서 검토를 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법률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教育基本法입니다.

아까 朴範珍 委員께서 주장을 하셨고 내용은 훌륭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말하자면 취학전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유치원교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경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포함시켜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빼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朴範珍 委員님과 의견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법 제5조, 제13조, 제16조에 學父母와 敎職員, 地域住民 그리고 學生들의 學校運營 參與權 이것을 명시하고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 반드시 이것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教育基本法 제5조 敎員, 學生, 學父母의 學校運營에 있어서의 參與權을 임의적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단지 학부모의 意見提示權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로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살아 있는 학교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물론 경우에 따라 달랐습니다마는 거의 많은 학교가 교장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굳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살아 있는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부모들의 의견제시가 단순한 의견제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의견이 존중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학교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朴範珍 委員께서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私立學校도 당연히 學校運營委員會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학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의 건학이념이나 또 교육철학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상에 있어서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돼 가지고 똑같이 공립과 다름없이 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특히 지금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율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배정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에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다면 학부모들의 違憲 訴請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朴範珍 委員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學習者의 權利는 헌법에 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추상적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學生들의 權利입니다. 교원의 연구활동 방해, 학내 공공질서 문란 이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 이것으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완전한 민주주의 장치가 보장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정도의 부분이면 아무런 탈이 없다 이런 상황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독재권력에 하도 찌들려 왔기 때문에 이런 교원의 연구활동 방해나 학내 공공질서 문란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일방적인 입

장에서 제재를 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칙에 규정해서, 학칙에 준수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學內에서 安全事故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은 교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린교육을 해야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밖으로 나간다는지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말그대로 자연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자연과 같이 하고 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근본부터 박탈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혹시 사고나면 어떻게 하느냐? 교장들이 학생들을 안보내려고 합니다. 사고나면 모두 다 교장들이 책임지고 교사가 책임져야 하니까 자연히 움추러드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初·中等教育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學校運營委員會 이 부분은 學父母會 그 다음에 教師會 이런 내용들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제화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義務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또는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學校運營委員會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 해결을 위한 仲裁委員會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치가 있어야만이 원활한 학교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중재위원회 설치가 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高等教育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學則의 문제입니다.

대학운영은 학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

습니다. 이를 테면 대학운영의 근간은 학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의 특성과 현실과 맞게 자율적으로 이 학칙을 개정하고 제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大學自律化를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칙을 교육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대학의 자율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학칙은 법령에 의해서 대학 자율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는 이 학칙을 제출받아서 법령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칙은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원들이 이렇게 쪽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에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사회에서 시간강사들이 겪고 있는 애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에서도 시간강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고등교육법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의 처우는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학교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 안시킨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 점을 지금까지 너무 무심경하게 대해 왔습니다. 차제에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이전에 교원에 시간강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助教도 있습니다. 이 조교가 학교마다 다르고 공립학교 다르고 사립학교 다르고 각 학교마다 다른데 이 助教가 해야 할 任務를 분명히 규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냥 學事에 관한 業務 補助者 이 정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고 이 조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大學自治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教授와 教職員이 참여하는 議事決定 機構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총장이나 이사회에서 학교의 주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학자치를 위해서는 교수와 교직원의 의사결정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학교를 아깁니다. 그분들은 평생 그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자치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사회, 총장도 중요하지만 교수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大學評議員會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립대학에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大學評議員會가 심의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리 매김이 되어야만이 대학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평의회에서는 教授會, 職員會, 學生會 이런 것들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임의기구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教育3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私立學校法改正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격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교를 해야될 이런 상황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중에 그런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私立學校法改正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보고받고 있는 내용은 통·폐합 대상학교가 180명 이하의 학생수가 중학교 66개교, 고등학교 8개교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을 代案學校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효율성만 생각해 가지고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학교가 훨씬 더 교육효과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학교에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욱 효과적이고 진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들은 작은 학교에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만 생각해서 통·폐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학교일수록 의외로 교육은 더 충실해질 수 있고 올바른 교육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통·폐합만 주력하지 마시고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私立學校改正法에 보면 없던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해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殘餘財産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 당시의 학교법인이 정하는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제35조2의 제5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물론 농촌학교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격감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럴 경우에 학교설립자에게 학교부지를 교육부에서 사가지고 그 설립자에게 돈을 준다 이래서 각급학교에 한 10억정도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 계산방법도 전연 우리가 계산한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전연 다른 차원인데 우선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학교를 설립한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간에 교육에 끼친 공헌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어쩌면 폐교를 해야 될 처지에 있는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는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교육부에서 사가지고 그 설립자에게 돈으로 환산해서 준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꼭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를 매입을 해서 공립학교로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 收益用基本財産 이것은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용기본재산은 돌려주고 그리고 教育用基本財産은 교육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 것이 아니라 교육용기본재산은 國庫로 들어오게 해서 공립으로 만들고 수익용기본재산만 그 설립자가 다시 가져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 다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쁜 사립학교설립자가 학교를 고의로 부실화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여상의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덕설립자가 없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장치가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통·폐합에 한정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은 설립자가 가져가도록 한다면 공립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를 그냥 다 사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공립화할 수 있는 장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위원회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교육부에서 산출한 것하고 본위원회 산출한 것하고 차이점이 나는 부분을 몇 가지 산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북지역의 죽장학원, 산동학원, 화북학원, 소보학원, 삼성학원, 삼영학원 이 여섯개 학원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은 교육용기본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용기본재산입니다. 다 경북에 있는 학원들입니다. 이 여섯개 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중에서 토지가액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죽장학원은 교육부 산출에는 3억8만원인데 본위원회 산출한 액수로는 9억5,1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6억5,000이나 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교육부에서 전체 다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벌써 예산상에서 6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산동학원은 교육부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4억4,000입니다. 또 화북학원은 100만원인데 이것도 400만원이고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 이를테면 지금 운영상 통·폐합해야 할 학교들을 교육부에서 계산한 자료하고 본위원회 계산한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익용기본재산만 설립자가 가져가게 하는 그리고 교육용기본재산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거두어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사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예산상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

그 다음에 徐相穆 委員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저는 진작에 이 법안이 통과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 법안을 여당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안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때 기초자치단체간에 재정상의 격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하고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법안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반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관께서는 이 법안이 내무부쪽에서, 이미 제가 내무부쪽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습시다. 내무부쪽으로부터 마찰없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澤秀 薛 勳 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소 의욕이 넘쳐서 아주 장시간 해주셔서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鄭喜卿 委員께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저는 평생 교직자입니다. 지금도 교육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대학 교수도 해보고 학교교장도 해보았습시다마는 법률을 의식하고 교육을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지나치게 법률에 의해서 시시콜콜히 규제가 되면 그만큼 교육이 가지는 자율성은 침해가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온 정부에서 제안하신 여섯 개 법안 또 徐相穆 委員님께서 제안하신 법안 하나를 보면서, 그러나 법은 필요합니다. 보면서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교육에 제 이야기가 전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모르거나와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徐相穆 委員님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하실 때는 여당위원님들끼리만 발의하지 마시고 적어도 교육위원들한테 한번 돌려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법을 할 때는 동료를 보다 많이 껴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徐相穆 委員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놓으신 법안 가운데 教育基本法에 국가 교육이념문제가 나왔는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과연 교육부가 이 弘益人間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반추해 보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했던 일이 있으셨던가를 여쭙어 봅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속에서 납득을 합니다마는 교육자들간에는 상당히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비아냥대는 경우들이 많고 또 행동과학면에서 보면 전연 어디를 잡을 데 없는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이념을 보면 교육은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도 받습시다마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쓰기 위해서 다시-말해서 사회발전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쓰여지는 면에 대해서는 교육이념에 전연 成文化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나 또는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음에 나오는 자세한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그런 教育基本法에 대한 근간을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30여년동안을 거쳐오는 가운데 누더기가 되어 버린 교육법을 이번에 다시 참신하게 새로 세우는 일인데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의문이 생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初·中等學校法을 잠깐 들여다 봅니다. 전에 初·中等教育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내놓으신 것을 보면 學則을 아주 강력하게 법률로 규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준칙만 나오면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학교의 학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私學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준화된 다음에도 초·중등교육에서까지 비난을 많이 받습시다마는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만이 가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애셋(asset)입니다. 資産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도 학칙이 지금 이 법률에 나타난대로라고 한다면, 거의 완성된 학칙을 내려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칙은 그 학교에서 만들어져 올라온 것이 인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을 때 뭔가 잘 못되어 있으면 좀 고쳐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 떨어버리는 그러한, 법률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安澤秀 幹事, 金顯煜 委員長과 사회교대)

두번째로 대학교의 교원의 임무를 보았더니 총장의 명을 받아, 총장의 지도를 받아, 총장의 뭉을 받아…… 전문인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대학교수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교원에서는, 전문직이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교수를 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長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長을 하면서 우리의 교원들이 교장의 명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고 느껴본 일도 없고 생각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없애야 되는 조항으로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의 말씀을 받아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교과목과 학생지도와 또 기타 그분들이 수행해야 할 행정적인 부담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교장의 命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死文化된 것인데 命은 뭐고 지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 살짝 바꾸어 놓았다고 선생님들 기분 좋아지는 것 전혀 없습니다. 아까 薛勳委員長께서 교육개혁심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내려서는 안될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반교육적인 그러한 命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문직 훈련을 받은 교사들은 자기의 전문직의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學校運營委員會의 件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시험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薛勳委員長이나 몇 분 위원이 이것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론적인 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의 민주화 학교교육의 여론을 통한 어떤 성장을 기할 수는 있는 좋은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원칙적으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심의를 거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넣는다고 한다면 사립학교가 여기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냥 보면 사립학교의 사정을 봐주어서 이것을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립학교가 이것으로 해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공립이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平準化施策 20년에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공립학교가 하는 것은 덮어놓고 좋은 것, 사립학교 하는 것은 덮어놓고 뭘지 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마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가사 공립에서 교장이 하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것 참 좋은 일이라 하는 얘기가 되었다면 왜 사립학교에 못합니까? 그런데 왜 못 하는고 하니 제가 고등학교 교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의 위치가 완전히 흔들려버린 것이예요. 그 것은 공립학교 교장들의 말씀입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은 감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내가 이렇게 지금 기분 나쁘고 이렇게 지금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마 보고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시대에 교장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도 법률적으로 좀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장의 입장, 어쨌든 교장은 학교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장의 입장이라든가 교장의 위치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되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학생이, 초·중등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똑같은 자격으로라든가 참고인으로든가 마찬가지예요.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어른들이 그 애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 법률에 그러한 것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생의 참석문제 그리고 교장의 입장이나 위치 그리고 만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부의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사립학교도 똑같이 절대적으로 공립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發展基金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을 경험한 육감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지요. 한국에, 한국사람들이라고 그러지요. 한국사람, 한국의 학부형은 자기의 이해에 상관없이 학교에 단돈 10원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학교행정을 맡은 20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발전기금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어디다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이것을 법률에다가 넣으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학교현실에서의 부정을 잉태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재고해 주셔야지 교육부가 시끄럽지 않고 교육청이 시끄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문제입니다.

아까 薛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5조, 36조를 보면 유치원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몇 살부터 들어간다는 자격만 나오고요. 전연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을 義務教育化하려다가 재경원에서 '1조6,000억이라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게 아마 후퇴를 한 모양인데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까지 경과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그러면 다 私設이고 公立 별로 안됩니다. 일단 경과조치로 각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을 한번 공립학교의 의무화로 하실 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세번째로 넘어갑시다. 교육평가원의 문제인데요.

교육평가원의 기능을 보니까 제가 아주 귀에 매우 익은 教育評價院의 목적이 教育開發院의 목적과 전적으로 오버랩이 됩니다. 교육평가원은 평가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나라에서 교육개발원이 지금 20몇 년 되었나요? 그랬는데 이것 하나 겨우 국가출연기관으로 굉장히 잘 해 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 하고요.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 태어나는 국가출연기관으로서의 교육평가원이 교육개발원과 똑같은 목적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줄로 알고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서 교육평가원이 정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때에 가면 모르지만 지금은 평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이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評價院의 職員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승진메리트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인은 昇進보다도 昇給에 더 관심있고 우리는 그렇게 끌여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이 명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승진시스템 때문에 명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선의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하는 일 보다는 교육행정, 교육행정 하는 일보다는 교육감독 하는 일로 身分上昇을 굉장히 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많이 망쳤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평가원에서 제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입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교육평가원을 세울 때에는 학교교육 일선에서 공식, 비공식의 프린지 인컴(fringe income)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무슨 여러 가지 학생지도비다 뭐다 하는 수당들이 굉장히 많이 깎여 내려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승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報酬面에서 배려를 많이 하신다면…… 이 승진메리트에 너무 개입이 되게 되면 연구원인데 평생가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으로 생을 마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평가원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제대로 수입도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 없어요. 사설학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競試,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폭적으로 학력고사를 금지를 해야만 교육평가원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의 사설학교법 가운데 영세한 사학을 그만둘 수 있게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시한을 왜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薛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2000년까지로 해 놓으면 더군다나 보상을 하고 돈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러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심의회가 있고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까마는 2000년까지 못박아 두면 2000년 이후에 생기는…… 농어촌의 학교가 더 줄어든다는 것을 혹시 내다보지 못하시는지, 왜 2000년까지로 하셨는지를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대안학교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결론으로 지난 7월10일날 아침에 MBC-TV에서 영광 성지고등학교, 제가 굉장히 감명깊게 그 MBC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언할 때에 모든 교육의 복잡한 문제를 뛰어 넘어서 教育의 原形으로 돌아가자, 교육의 프라임모드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그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굉장

히 불량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들은 거기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착한, 행복한 얼굴을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장님께 간곡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광 성지학교를 꼭 한번 현지답사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私學財團의 폐지와 더불어 그런 스타일의 것을, 그런 모형의 학교들을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안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鄭喜卿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해 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까지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괜찮으시지요?

○鄭喜卿委員 제가 議事進行發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顯煜 그렇게 하시지요.

○鄭喜卿委員 오늘 네 분이 발언하셨는데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질의가 다 되었고 대체토론이 되었으니까요. 답변을 겹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답변을 들어야지요.

○鄭喜卿委員 듣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잠시 정회하지요.

잠시 停會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顯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 위원회의 의사를 모으겠습니다.

여섯가지 법안이 오늘 제안이 되었고 검토보고가 끝나서 1차적인 대체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委員會 運營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教育基本 3法을 비롯해서 기타 다른 세가지 법안 모두가 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정성스럽게 국민적인 합의도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았겠지만 우리 立法府의 입장에서 볼 때 각 법안마다 모두 다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제정과정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法案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해야 할텐데 이 경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구성이 여당의 숫자가 더 많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곱분 중에 위원장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서한샘委員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여당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薛 勳委員이 오늘 활용한 날치기라는 표현은 위원장이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일방적이고 준폭력적으로 이 법안들을 끌어갈 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깊은 우려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친 정회와 또 간사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서한샘委員의 인격과 이분의 권능과 이분의 양식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진행이나 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나 또 비이성적인 그러한 위원회 운영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는 양심선언을 위원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여섯개의 법안은 우리 教育委員會에 설치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토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薛 勳委員 議事進行發言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기 전에 우리 教育部 答辯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실 분이 한 분도 안계시고 또 여당위원들 중에서도 이석하실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교육부 답변을 충분히 들어보면 또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육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도록 하지요.

○委員長 金顯煜 원래 그런 순서였다면 구태여 이러한 논의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도 자리를 뜰 분이 없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서한샘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議決定足數가 아주 정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먼저 의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밤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顯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여섯 건의 법안을 포함해서 또 현재 계류 중인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改正法律案도 함께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여섯개의 法律案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일깨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安澤秀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특히 강조해서 질의하신 두가지 답변을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에서 하던 修能試驗을 정부 출연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나? 공신력의 문제, 행정력, 보완력의 문제 또 정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능시험의 시행주체는 教育部長官입니다.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하고 앞으로 새로 창설될 정부 출연의 특수법인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경우에도 시행주체인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국립교육평가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마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학력평가가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립교육평가원이 관료조직이고 위계적이고 순환보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學力評價에 관한 연구조차도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修能試驗의 하나의 터였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교육개혁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요새 수준별 교육과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2000년부터는 절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많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새로 창설될 教育課程評價院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불가피하게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教育課程評價院을 설립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修能試驗과 연관해서 지금 國立教育評價院의 직원이 약 125명입니다. 이 중에 한 25명이 修能試驗에 전념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教育課程評價院이 수립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공적 영역이 일정기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바로 최소한 그정도 인원이 계속해서 修能試驗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 현재도 修能試驗의 관장은 그 분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教育部에 아주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참여 또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새 기관이 창설되어도 적어도 修能試驗의 관리에 관해서는 종전이나 똑같이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教育部 중심 정부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國立教育評價院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 평가원의 폐지의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大統領令으로 教育部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습니다. 이 附則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폐지가 결정이 됐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國立教育評價院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느냐, 이 사람들은 대개 어디로 갈 수 있는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國立教育評價院의 현원은 125명입니다. 教育部는 평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그 평가원 기능중에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독학학위검정 업무라든가 국비유학생선발 시험업무가 있습니다. 이들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약 40명이

이들 업무의 소관기관을 따라서 정원 이체해서 재배치가 됩니다.

다음에 수학능력시험을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치를 수 있는 약 25명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새로 발족하는 教育課程評價院에 그대로 파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國立教育評價院 스태프 중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경우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教育課程評價院의 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최대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원자가 약 5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1997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의 모든 결원에 대한 충원을 중지하여 평가원 과원들을 우선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전문직 중 교장, 교감 전직대상자가 여러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서울 및 경기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희망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과원이 남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教育部 본부 및 제 유관기관에 근무부서를 지정하여 근무케 한 후 결원 발생시에 우선 임용케 할 생각입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도 반년 이상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입장을 國立教育評價院에 가서 장관의 이름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하였고 직원들이 만족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教育課程評價院이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의 이상과 걸맞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잠깐 아울러서 KEDI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EDI는 지금 엄청나게 매머드 기관입니다. 박사님들이 한 80분 계십니다. 여기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조사 통계에 관한 모든 업무, 또 앞으로는 학교평가에 관한 것 또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학점인정제에 대한 업무 이런 굉장히 많은 잡다한 이질적인 업무들이 여기에서 수행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교육과정에 관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한 26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하고 관료기구인 國立教育評價院하고 잘 연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하고

사실 학력평가하고 연계가 되어서 함께 발전을 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하고 학력평가가 함께 순수하게 연계되어서 교육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구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教育開發院에 전부 얹쳐지는 경우에 教育開發院은 정갈 잡동사니의 아주 매머드, 우리나라에서 상상 못할 그런 대규모의 기관으로 제 기능을 달성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오랜 논의 끝에 새로 창설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과 학력평가가 함께 터를 같이 하는 경우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영국의 예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쪽 업무가 시간이 가면 꽤 숫자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학력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꽤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安澤秀委員님께서 고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기관이 창설되더라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실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의 教育開發院과 무관하게 일을 수행하면 이것은 교육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教育開發院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책연구하고 教育課程評價院의 업무를 기능적으로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安澤秀委員님께서 산업대학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개방대학의 산업대학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산업대학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두 개 대학을 산업대학 명칭을 다시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모든 대학에 그 명칭을 빼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죄송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이 말씀에 따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그전이나 지금이나 또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두 산업대학이 그러니까 이름은 산업자가 붙지 않은 산업대학이 올해 일반대학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지금 대학설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충족되면 일반대학 개편을 허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아직 심의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高等教育法에서 열거하고 있는 學校의 種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대학 명칭을 삭제한다면?

삭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開放大學制度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폐지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産業大學이라는 그런 명칭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산업대학이 자기 設立目標을 갖고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수능시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진학의 기회가 이렇게 되면 봉쇄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地方大學制度 자체는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대학 명칭 자체를 삭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高等教育法案 제19조에서 논의되는 학교의 명칭사용 문제는 사실상 國立은 大統領令에 정하고 私立은 定款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교육법안하고 사립대학교 명칭 문제는 실질적으로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어렵게 드리겠습니다.

○安澤秀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기존의 학교이름, 두 학교가 産業이라는 이름을 떼고 지낸지가 몇년이 되는데, 그 몇년동안 수많은 대학생들이 一般大學인줄 알고 진학을 해서 그 두학교 중에서 한 학교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반대학으로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일반대학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그 신청을 받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 몇 년동안 학교 이름에서 산업을 떼어 가지고 사기를 치도록 해가지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나날이 발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해주고 이제와서 일반대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해주겠다. 教育部 行政이 이래가지고

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두둔해 주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해주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산업대학에서는 얼마나 不利益을 보게 됩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기준이 충족돼야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요. 신청했다고 무조건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安澤秀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안합니까? 그 몇 년동안 일반대학인 줄 알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학교가 날로 발전을 했다고 안합니까? 다른 산업대학은 産業 字를 붙이고 지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그 학교 가봤자 불일이 없다해서 학생모으기도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동안을 그렇게 발전하도록 묵인해 주고 이제와서는 일반대학 자격을 제법 갖추었으니 이제는 일반대학으로 허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깐 이것은 일이 안된다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한술 더 떠서 일반대학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렇다면 장난치는 놈만 잘되는 대학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교육부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대학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는 산업대학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여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답변을 들어보니 한술 더 뜨시네요. 기가 딱 차네요.

그러니까 이 산업대학은 빨리 떼 주는 것이 옳다 이말입니다. 교육부가 그런 식으로 2차에 걸쳐서 특혜를 주고 눈감아 주고 이제 와서는 일반대학으로까지 승격시켜 주겠다면.....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開放大學은 一般大學에 비해서 그동안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니다. 모든 개방대학이 혜택을 받았습니니다.

우선 일반대학에 비해서 설립이 엄청나게 용이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編入學 定員 별도 배정되고 있습니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다른 대학의 경우 27.3대1인데 이 경우는 1인당 학생수 평균이 일반대학의 거의 두배입니다. 54.9명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야간학생 정원을 별도로 인정해주었고 또 財政支援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특별

전형제도하에서의 학생모집이 엄청나게 유리했습니다.

○安澤秀委員 예, 압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光州大學은 産業 字때고 4년동안 실컷 잘 놀아가지고 오늘날 발전을 하늘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산업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전라북도산업대학의 産業 字를 떼주고 그냥 전북대학교로 해주었으면 광주산업대학하고 똑같이 지금 일반대학 신청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安澤秀委員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교육부 행정이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무엇을 설명해 도 우리를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 못하면서 무슨 教育改革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산업대학교를 산업이라는 글자를 안써도 학생모집이 되도록 목인을 해준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산업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産業 字를 떼고 강원대학교로 해서 한 3·4년 컸으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는 일반대학 신청을 하게 됐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대학에 産業 字를 떼준 것이 失手였다 는 그 이유때문에 모든 대학에 産業 字를 다 빼주면 더 큰 실수가 증폭돼서 재생산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安澤秀委員 참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산업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것하고 그냥 대학교라고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산업대학이란……

○安澤秀委員 지금 연세대학교도 산업인력을……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산업대학이라는 이름만 저희들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혜택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통에 산업대학이 自救努力이 열심이 했다면 또 했던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꽤 발전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만 해도 산업대학에 대한 지원이 가장 특성화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746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 99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올라있는 것이 1,100억원입니다. 일반대학에 비해서 엄청난 비율로 산업대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安澤秀委員 지원 안해주셔도 돼요. 이름에서 産業 字만 떼고 3년, 4년만 지나면 오늘날 광주대학 만큼 큼니다. 그것만 아시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朴範珍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裴鍾茂委員 위원장님 기왕 산업대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顯煜 그렇게 하시지요.

○裴鍾茂委員 산업대학 문제에 대해서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습시다마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産業大學에 대해서 여태까지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업대학을 망치는 방향으로 그만큼 엄청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산업대학 학생들을 과거에 그렇게 양적으로만 키우고 질적으로는 낮추었기 때문에 산업대학 출신들이 안 좋고 산업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질적으로 낮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人員도 많이 주고 그랬다는데 인원만 많이 주고 施設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교수도 사실은 다른 데는 아주 많이 주었지만 산업대학은 적었습니다. 공립의 경우도 사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사립의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이나 또는 국립산업대학의 경우는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實驗實習費도 적고 여러 가지 시설도 미약하고 교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국의 폴리테크닉의 경우는 폴리테크닉하고 유니버시티하고 둘이 있는데 유니버시티가 연구대학교이고 폴리테크닉이 산업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에서 산업대학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도 산업대학에 안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름을 유니버시티로 바꾸었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學則으로도 규제할 수 있고 그 외에 승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업대학이라고 하는 조항을 大學 및 産業大學 해가지고 여기에다 만들어 놔는데 여기 産業大學에 있는 (目的)을 보더라도 “…… 産業人力을 양성함을……” 지금 産業人力을 양성하지 않는 대학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대학도 다 산업인력을 양성합니다.

여기 대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目的)에 보면 “大學은 人格을 도야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貢獻함을 目標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기에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말은 안 넣었습니다마는 각 대학들이 전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目的)도 사실은 대학에다가 1항하고 2항이 합해져서 들어가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授業年限)입니다. 이것도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制限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학의 경우에는 授業年限이 4年 내지 6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學點制라든지 시간제로 등록한다든지 또는 이와 같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대학의 연한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教科目履修의 인정) 産業大學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學校・研究機關 또는 産業體 등에서 행한 教育・研究 또는 實習 등을 특정한 教科目的 履修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른 대학의 경우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産業體 委託教育)도 “産業大學은 産業體에 위탁하여 教育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면도 다른 대학들이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 委託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대학조항에다 다 넣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도 규제할 수도 있고 또 학칙을 만들어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꼭 산업이라는 이름을 넣어야만 된다고 고집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高等教育法에다가 이렇게 산업대학의 조항을 특별히 넣어서까지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산업대학에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불이익도 많습니다.

엇그저께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들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업대학에는 여태까지 특별한 산업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까지도 敎職課程 履修가 없습니다. 같은 실업계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어야지요. 또 ROTC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 박사과정도 없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어야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업대학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대학이 일반대학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으면서도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에서 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폴리테크닉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유니버시티로 바꾸었겠느냐? 아까 朴範珍 委員長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국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법에도 대학 그러면 단기대학하고 4년대학하고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산업대학 해서 넣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 부분만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폴리테크닉의 경우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가 사실상 능력에 있어서 일반대학을 다 능가한 다음에 이름이 유니버시티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개량대학처럼 교육여건도 여러 가지 조건도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예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藪鍾茂委員**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더 앞섰다고 그러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이름을 같게 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산업대학의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대학의 경우는 정말 산업일선에 나가는 유능한 산업일꾼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일반대학도 꽤 많은 연륜을 거친후에도 박사학위과정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업대학에 박사과정이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산업대학의 경우에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산업대학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또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경우에 수능시험 안 보고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사실상 가장 좋은 데가 4년제 대학은 산업대학입니다. 특별전형이 50%가 넘습니다. 또 실제로 야간 정원의 경우에 사실 산업대학의 경우는 별도로 인정해줍니다. 주야간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개방대학의 경우에 야간이 주간보다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반대학이 산업인력 양성쪽으로 가고 있고 또 야간도 있다고 그래도 일반대학의 경우는 야간이 12% 정도입니다. 아직은 산업대학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자기 기능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대학화 하기는 아직 모자랍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립개방대학의 경우는 이공계열 중심으로 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특성화하고 우리가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립개방대학의 경우는 대학 설립 기준이 충족하면 일반대학으로 개편을 할 수 있지만 지금같은 열악한 상태에서 개편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혜택은 혜택대로 꽤 받았는데 이제는 이름만 떼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대학화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보통 학생들은 일반대학된 줄 알고 가는데 실제로는 산업대학이고 이름만 빠져 있으면 이것은 참

어려워집니다.

○**安澤秀委員** 지금 두 대학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 2년전 부터 개방대학에 대해서, 산업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대학의 내실화가 정책의 중요한 기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대학에 지원하는 것하고 지난 2년동안 산업대학에 지원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오랫동안 산업대학에 대해서 혜택을 주니까 따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데는 인색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있는 산업대학은 최대한 도와서 정 원하면 일반대학화시키고 그냥 특성을 유지하겠다고 자기들이 원한 데가 퍼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특성을 유지시켜 주고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짜서 아무나 산업대학 못오게 하고 산업대학이 살길을 우리가 찾아 드리는데 이름만 빼라는 얘기가 이것은 좀 심하십니다.

○**藪鍾茂委員** 이름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법이나 高等教育法에다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아까번에 조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쪽에 넣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나 기타로 해서 얼마든지 산업대학의 본래의 목적을 이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태어 법률로 꼭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말하자면 처음부터 거기를 차별대우한다는 인상을 안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영 쓸 수가 없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조항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저희들이 작년에 개방대학 업무담당 부서를 폐지하고 일반대학 업무 담당 부서로 우선 직제상으로는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節은 같이 하고 款은 달리 하려는 아주 최소한의 규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範珍 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朴範珍 委員님 말씀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이 조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는 教育基本法에 학생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학생의 입장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다른 교육 당사자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학생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初・中等教育法, 高等教育法에, 실제 참여의 경우는 우리가 면밀히 논의하고 사실 합의를 구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회만 열어놓은 것이지 어떤 역할을 어느정도 하겠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도 한정적으로 학생의 참여는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初・中等教育法에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근거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朴範珍 委員長, 薛 勳 委員長, 鄭喜卿 委員長 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 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도 저는 박수밖에 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교육재정중에 유아교육에 쓰는 것이 1997년 처음 1%를 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스웨덴같은 나라는 18%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에는 교육재정에 적어도 3% 2005년에는 5%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學校運營委員會制度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사립학교에도 의무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라든가 사학의 경우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능하고 운영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혀 없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朴範珍 委員長처럼 심의・의결권

은 어려우면 자문기구로라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문기구로서 얼마큼 구실을 할지 또 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기구인데 이 경우는 자문기관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法案小委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께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薛 勳 委員長님께서 教育3法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질의를, 제가 죽 써보니까 한 열댓개 하신 것 같습니다.

○朴範珍委員長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교원제도 이것은 안 합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교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셨고 교직수당 인상이나 담임수당 인상갓고는 불충분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하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우면 직급이라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首席教師制 말씀을 주셨습니다.

首席教師制는 教總과 저희들이 교섭・협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재경원에서 전혀 받아주지를 않아서 제출했다가는 다시 되돌리고 제출했다가는 되돌리고 한 번인가 두 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首席教師制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아시겠습니까마는 首席教師制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또 굉장히 유보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薛 勳 委員長님께서 좋은 말씀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의한 입장하고 교육부의 입장을 대비해 보면 교육부가 덜 개혁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보다 이상추구적인 그런 입장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과 조율해 가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또 教育3法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글썽요 균형감각이랄까 성숙 이런 쪽에 고려를 저희들

이 많이 합니다. 薛勳委員님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덜 진보적인 입장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이 오히려 교육계의 비교적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薛勳委員 제 의견은 진보냐 보수냐는 입장이 아니고 교육현장에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 소위 관료주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보수의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했느냐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느냐 그 차이라고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教育部長官 安秉永 알겠습니다. 薛勳委員님의 입장이 얼마만큼 현실에 접근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셨던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인 타당성문제는 더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면은 저희들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教育3법이 정권말기인데 조금 더 숙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教育3법 이것 그 동안 꽤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수없는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성숙됐다 해서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꽤 구해 왔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권과 이 문제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관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초·중등실장님하고 고등교육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선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제가 薛勳委員님께서 주장하시는 쪽에 기울어지는 것이 꽤 많은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시간강사나 조교가 현실생활속에서, 그들의 삶의 세계에서 겪어야 하는 애환 저도 못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강사가 일단은 학기단위로 학교에 관여하는 그런 쪽이고 조교의 역할도 조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옆에서 일손 도와줄 수도 있고 교수를 굉장히 밀도 있게 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나 조교를 실제로 법에 규정하기는 참 어려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논의도 꽤 했습니다. 포스트-닥(post-doc)制度 같은 것, 여기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것 해마다 늘이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사실상 이분들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법적으로 돕기는 점점 힘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私立學校法 改正과 연관해서 殘餘財産問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없어지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 代案學校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아주 깊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폐교되어 가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代案學校로 바꾸어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代案學校를 우리가 육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선 한 道에 하나의 代案學校라도, 제대로 제 구실을 하는 代案學校를 하나씩이라도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똑같은 규율에 의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代案學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鄭喜卿委員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컨대 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해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실천적인 지시를 하기에 참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문화와 연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 하면서 우리 교육의 어떤 본질을 관통하는 이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했는지 하여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교사들의 한 68%가 그래도 교육이념은 홍익이념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지들을 하시고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이만한 상징성과 이만한 함축성을 가진 개념이 다른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이 개념의 일종의 실효성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學則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경우도 자율성을 줄 바에야 학칙을 그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지, 그러니

까 학칙을 보고제로 하지 왜 인가제로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점도 저희들이 정책토론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도 政策當路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의 틀 안에서 별 문제없이 마련한다는 확신 같은 것이 저희들한테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 동안 실무에 종사했던 분들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펄쩍펄쩍 뚱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분들이 조금 자의적으로 학칙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정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했던 말이에요. 보고를 받아서 이것 엄청난 것이면 그것을 시정하고 다시 바로 잡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긴다, 이것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잡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컨대 초·중등학교의 경우에 학급편제라든가 교과라든가 수업일수 입학, 전학 이런 게 전부 학칙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엉뚱한 규정을 뒤늦게 우리가 발견한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인가사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보고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가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薛 勳委員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를테면 사립대학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부 문제가 된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립대학, 국립대학이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국립대학에는 學則을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 정말 교육부의 관료주의 아니겠느냐.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만큼 국립대학 교수들이나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현실적으로 조건이 맞게끔 자기들 대학내에 고유한 상황들이 있을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텐데, 정 안 된다면 실험

대학이라도 몇 개 정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율성을 주어야만이 교육부 당국자들도 무슨 땀 흘리는 부분이 풀리지 꼭 쥐고 있으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알겠습니다.

○鄭喜卿委員 같은 黨에 있으면서 다른 얘기하게 되는데 대학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던 것은 초·중등학교의 학칙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립의 문제가 아니라 學則이라는 것 자체가, 준칙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준칙은 가이드라인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딱 고정적으로 법률로 정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쭙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믿어주셔야지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 쪽으로 또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學校運營委員會制度는 저도 비교적 성공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은 실험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하고 시행착오를 한번 아주 밀도있게 리뷰(review)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제도개혁을 해야지 지금 조금 선불리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學校運營委員會制度는 굉장히 밝은 면도 있고 또 조금 우려되는 면도 없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教育開發院의 목적하고 教育評價院의 목적을 같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평가원 나름대로의 바른 기능을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정평가원이 처음에는 정부출연에 많이 의존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사실상 프린지 인컴(fringe income)이 꽤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제 기능을 하면서 자체 수입을 늘려가는 경우에 이것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우리 입장하고도 맞아들어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못 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께서 제 미진한 부분을 채워겠습니다.

○鄭喜卿委員 장관님, 기왕 일어서셨으니까, 너무 오래 서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산업대학문제인데 이게 참 목구멍에 걸린 가시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전혀 다른 형태로, 어떻게 보면 산업대학은 그저 오프닝 유니버시티 개념안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도 매일 다니지 않는다 뿐이지 오프닝 유니버시티의 개념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법률, 고등교육법을 보면 엉뚱하게도 두 개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운영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더 겹쳐지는데 작년에 이 산업대학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나왔을 때 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아까 광주대학교라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졌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분이 여당의원으로 있을 때 “산업”이라는 것을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장관님께도 굉장히 목의 가시같이 걸려 있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산업대학문제를, 왜 지금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정부가 말이지요.

자꾸만 장관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유념하셔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계속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가서 계속 거기가는 아이들을 자존심 상하게 하실 것인지 이것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을 여러가지 형태로 놓으셨는데 한번 목적을 비교해 보시고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산업중견기술인, 산업인력 또 무슨 인력이든가요. 제가 아까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高等教育法案을 소위원회에 넘기면서 제가 의견을 거기에다 붙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 올리겠는데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하는 모든 학교가 한번 창설이 되면 一般大學化 하려는 아주 엄청난 욕구가 있고 그런 팽배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放送通信大學을 고려대학교 어떤 분이

집중적인 연구를 했는데 방송통신대학의 변화과정을 죽 연구하면서 이 과정은 일반대학화하려는 몸부림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이 자기 역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화하려고 합니다.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설립목적과 연관해서 밀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薛 勳委員 잠깐만요. 제가 장관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教育3法을 改正하자고 하는데 교육3법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6개 법안을 올려놓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점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고비용 구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規制撤廢, 한국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서 각종 규제철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49년 교육부 만든 이후로 겹겹이 쌓여 있다고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하라는 얘기는 안하겠어요. 과감히 하라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教育3法을 고칠 때 왜 규제철폐 그 얘기가 나왔는지 왜 한국 경제가 규제철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우리 교육현장도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철폐라는 개념이 이번 기회에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3法을 바꾸면서 교육부가 과감히 자기의 묵은 때를 벗겨내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것이 교육부 자체의 발전 뿐만 아니고 교육부 자체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풀어놓아야지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안돌아가는데요.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제발 이번에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알겠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여러 스텝들한테도 의미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顯煜 또 답변하실 실·국장들 계신가요? 답변하기 희망하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薛 勳委員 다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顯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답변드릴 것이 대여섯건 되었는데 장관님이 답변을 다 하셔서 하나하나 뽑다 보니깐 이 만큼밖에 없습니다.

먼저 薛勳委員長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이 교육3법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93년부터 95년까지 2년 동안에 고려대 표시열 교수, 안기성 교수에게 정책연구과제로서 구체적으로 教育法 개편에 관하여 2년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5월31일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과제를 발표한 후에 96년2월9일에 교육개혁위원회의 改革試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육부에서 실무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에는 教育3法專門家協議會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김동희 교수와 8인이 또 모여서 교육부 실무안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96년7월19일에는 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육계 각계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자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6년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6년10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그동안에 수렴된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법안을 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안되어서 금년 3월부터 5월 2개월 동안에 교육부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教育規制緩和審議委員會에서 규제와 혹시 관련되는 조항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또 가지고 가서 이것을 두 달 동안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해당되는 법을 전부 가지고 가서 또 다시 두 달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금년 6월달에 법안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薛勳委員長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야당하고는 얼마나 얘기해 보았습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여기에 꼭 정당하고는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薛勳委員長 그러니까 당장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요.

○委員長 金顯煜 여당과 黨政協議는 거치잖아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어느 당…… 그것은 우리 법 절차

상 당정협의를 사전에 거치고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長 金顯煜 법 절차는 아니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육부만 열심히 당정협의를 많이 거치더라고, 그것도 사실이니깐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법안에 대해서는 정무장관실을 통해서 公文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법안에 관해서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金顯煜 공문이지 법 내용은 아니지요.

○薛勳委員長 여당과야 당연히 상의하지요. 그것이야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93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법을 만들면서 내가 만일에 교육부 관계자라면 나는 야당쪽에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텐데…… 물론 여기와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는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눈에 봐도 문제점이 득실득실한 이런 법안이 나왔느냐? 그동안 몇 년간 뭘 하셨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薛勳委員長님께서 教育基本法 12條에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12조 구정의 1항과 2항은 학습자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3항은 의무에 관한 이야기로서……

○薛勳委員長 잠깐만요, 모두부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이것이 근 50년만에 법을 새로 제정하는 듯한 이런 형태로 教育法을 바꾸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의 틀을 새로 가다듬는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예.

○薛勳委員長 아주 야심적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그 견해에 전연 동의를 안하시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50년만에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는 작업인데 이런 일은 성격상 시점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제가 교육부 당국자라면 준비 했다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우리가 했습

니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검토가 모자랍니다. 다음 정권에서 이것은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하려면 새로 정권을 만든 쪽에서 그 쪽에 맞는 교육철학으로 문제를 풀 어떤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政權을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준비는 철저히 해서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제가 우리 黨이 집권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틀림없이 집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 안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李會昌 政權이든 무슨 정권이 되든간에 그 정권으로 넘겨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행정실무자로서는 그 시기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언제가 적당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순서로 봐서, 그렇게만 생각했지 時期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薛 勳委員 그 부분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勇源 그리고 학습자 규정의 1항과 2항은 권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薛 勳委員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것이 冒頭에서 한 질의이기 때문에 長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것이 교육개혁위원회 시안하고 현재 교육부 案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기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장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하시는 것이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教育改革委員會 試案은 이렇게 안돼있어요. 제가 쪽 추적했던 것이 그것이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教育部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바뀌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顯煜 장관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담당 실·국장이 하는 것이……

○薛 勳委員 아니요. 제가 보건대 실장이 하시는 것 보다는 장관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教育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들어야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 말하자면 오히려 공개적인 스토리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教育改革委員會에서는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조금 이상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 시안을 가지고 일종의 공론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公聽會도 하고 또 집중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도 請하고 또 현장하고의 대화도 저희들이 밀도있게 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공공연하게 이런 法律案으로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案이 그랬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그대로 문구대로 再版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委員長 金顯煜 薛 勳委員 됐어요?

○薛 勳委員 이것은 논쟁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國立大學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분들 말씀이 과격한 표현이고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는 教育部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이야기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교육관료들이 꼭 틀어쥐고 앉아 있어서 한국교육 자체가 안풀린다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속된 말로 해서 내 밥그릇 뺏긴다, 세상에 내 밥그릇 뺏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육이 된다면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살아 난다고 생각해요. 그 각오 없이는 韓國教育 정상화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풀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할 때 그

때 진짜 한국교육이 정상화된 상태로 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오를 새로 해야 합니다. 내 것 내놓겠다. 내 집안에 있는 것 다 풀어 놓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國立教育評價院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차관급의 관료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해체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움켜잡고 권한을 행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안이든 의안이든 마련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셔서 돕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지도 저희들 法律案에는 꽤 많이 수렴이 돼있습니다.

○委員長 金顯煜 다른 실·국장들의 답변이 몇개 남아있지요? 설위원 답변을 계속해서……

○鄭喜卿委員 정족수가 안된다면서요?

○委員長 金顯煜 예, 議決定足數가 안돼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분들 나오셔서……

○鄭喜卿委員 회의진행발언 하나 할까요?

○委員長 金顯煜 아니 시간이 없는데 자꾸 회의 진행발언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鄭喜卿委員 그러니까 미진한…… 토론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아까 12시까지라고 그러셨지만 그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나갔다가 정족수가 안돼서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아까 우리가 결의한 것으로 해서 회의를 종료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설위원님께서 납득하시면……

○委員長 金顯煜 설위원의 의견을 좀……

○薛勳委員 내가 나쁜 놈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鄭喜卿委員 전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도 薛勳委員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野黨委員이라서 설위원하고 동감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동감은 합니다.

○薛勳委員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사람 앉아 있는 자리에서 굳이 고집부린다면 이상하게 들립니다마는 法案審査小委에서 제가 방청을 하겠습니다. 방청을 해서 필요하면 저도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결의만 안하면 되니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어차피 이것은 세세하게 字句 하

나하나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고 제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듣지 못한 부분을 함께 들으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顯煜 그래요. 薛勳委員이 이렇게 상당히 건설적이고 협력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서한샘 小委員長께서 동료위원이 참고인으로 오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하되 표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서한샘委員 예.

○委員長 金顯煜 그러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가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야기대로 교육 3법 개정이 政權交替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할 여당 측의 집안사정이 대단히 복잡다기해서 이 法律案 審議에 전혀 성의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중요한 국가적인 立法을 하는데 있어서 순조롭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권교체 시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與黨委員들이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당내 경선을 가지고 이러는데 국가적인 경선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로 産業大學問題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충분히 토론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대학이 생성되는 과정과 오늘날의 모습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 책임은 산업대학을 세운 사람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정치권과 그리고 행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장관께서는 거의 대학 측에만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만일 安秉永 長官이 산업대학총장 출신의 교육부장관이었으면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와 활동한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에 대한 편견과 선입감과 그리고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산업대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너무 지나친 알레르기적 반대반응을 보이는 것도 우리 산업대학의 현실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번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장관은 우리 教育委員會 委員 여러분

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국회는 결정하는 것 모두가 다 法案이 되고 그것을 정부에서 집행합니다. 우리 국회의 권능과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行政府의 권한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행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우리도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심의에 열의를 보일 것입니다.

만일 이런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長官의 독특한 철학과 주장에 조금도 굽힘이 없이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는 이것은 처음부터 자문기구로 출발해 가지고 점진적인 운영위의 효과를 거두면서 의결기구로 넘어갔어야 합니다. 일단계를 거쳤어야 돼요.

이 개혁과 민주화라는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조급히 만들다보니까 학교에서 지금 교장의 권위와 그리고 교사들의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委員長이 지난번에 여러명의 교사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많이 생기느냐 학교의 주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學校運營委員會가 생김으로써 모든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하고 교장과 교사들은 구경하고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委員長으로서의 사립학교도 그렇습니다. 아까 鄭喜卿 委員長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분리해서 시작한 것도 잘못입니다. 일단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다 의무교육인데 여기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귀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모두 다 사립 공립 가리지 않고 하되 이것을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환원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지금 이 학교가 겪고 있는 이 세기 말적인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적인 측면의 대응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長官께서 여러 가지 정말로 역대 어떠한 長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개

혁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長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長官이 결정한 정책이 내년도 다른 長官이 들어왔을 때 정당성을 부여받느냐, 역사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균형과 그리고 합리성 현실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국회가 16명의 國會議員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법 이전에 한스 켈젠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가 헌법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安長官은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재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18일 4차 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전 10시로 開議時間을 변경하겠습니다. 3黨 幹事간에 합의를 했고 또 그 날은 대학입시관련 내신제도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참고인을 초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 趙吉濬교장 그리고 수도권지역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 교장 한 분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대학입시관련 내신제도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 논의된 6건의 法案은 法案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토록 하고 또 이미 法案審査委員會에 계류되어 있는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改正法律案도 같이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法案審査小委員會가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教育委員會가 開議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55분 산회)

○出席委員

金顯煜	金重緯	朴範珍	徐相穆
서한샘	咸鍾漢	洪文鐘	金한길

裴鍾茂 薛勳 鄭喜卿 安澤秀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富永
專門委員 柳三鉉

○出席國務委員

教育部長官 安秉永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次官	李	永	鐸
企劃管理室長	李	勇	源
初中等教育室長	鄭	用	述
高等教育室長	張	五	鉉
教育政策企劃局長	鄭	相	煥
地方教育行政局長	李	基	雨
平生教育局長	辛	晉	基
教育情報管理局長	徐	三	英

○政府側參席者

教育部

公報官	李	起	虎
教員政策審議官	朴	贊	奉
教育課程審議官	俞	千	根
初等獎學官	朴	東	圭
大學教育政策官	金	永	植
產業教育政策官	徐	凡	錫
學生福祉政策官	成	耆	薰
總務課長	金	正	基